

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(안)

의안번호	제 호
의결년월일	

제출년월일 : 2005. 6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사유

- 본 매입대상 토지는 2001년부터 시행중인 신평1동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내 개인사유지로서 주민쉼터조성을 위한 사업부지로 활용코자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매입코자 하며,
- 대지의 위치·규모·형태로 보아 주민휴식공간 조성지로서 활용가치가 높ی 평가되는 등 사업목적에 부합한 재산으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 해결과 민원해소 차원에서 쉼터조성을 위해 매입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【취득재산】

- 토 지 : 1필지 $831m^2$
- 건 물 : 5동 $208.56m^2$
※ 보상후 멸실조치
- 예정가격 : 380,013천원(감정가격 기준)

【처분재산】

- 건 물 : 5동 $208.56m^2$ (지상 1층)

3. 근거법령

- 지방자치법 제35조
- 지방재정법 제77조, 같은법 시행령 제84조
-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

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(안)

회계명: 일반회계

(단위 : 천원, m²)

구 분			상 반 기			하 반 기			합 계		
			건수	수량	금 액	건수	수 량	금 액	건수	수 량	금 액
취득	계	토지 건물 기타	1 5	831 208.56	344,865 35,148				1 5	831 208.56	344,865 35,148
	1. 매입	토지 건물 기타	1 5	831 208.56	344,865 35,148				1 5	831 208.56	344,865 35,148
	2. 교환 으로 취득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
	3. 기타 취득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
처분	계	토지 건물 기타	5	208.56	35,148				5	208.56	35,148
	4 .매각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
	5. 양여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
	6. 멸실	토지 건물 기타	5	208.56	35,148				5	208.56	35,148

2005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

회계명: 일반회계

(단위 : 천원, m')

일련 번호	재 산 의 표 시			취득가액	취득시기	취 득 사 유	취득재산소유자 주소, 성명	비 고
	지목	소 재 지	수량					
총계		토지 1필지 건물 5동	831 208.56	344,865 35,148				
소계		1필지	831	344,865				
1	대지	구미시 신평동 368-3	831	344,865	2005년 상반기	신평1동(본동) 주민신탁터 부지	구미시 형곡동 125-9 김주형	감정 가격
소계		5동	208.56	35,148				
1	건물	구미시 신평동 368-3	40.66	6,708	2005년 상반기	신평1동(본동) 주민신탁터 부지	구미시 형곡동 125-9 김주형	감정 가격
2	건물	"	20.50	3,997	"	"	"	"
3	건물	"	58.84	4,059	"	"	"	"
4	건물	"	19.17	3,738	"	"	"	"
5	건물	"	69.39	16,646	"	"	"	"

취득대상 토지 및 건물

□ 재산의 표시

○ 토 지($831m^2$)

▶ 구미시 신평동 368-3번지 지목 : 대지 면적 : $831m^2$

○ 건 물($208.56m^2$)

▶ 구미시 신평동 368-3번지 연면적 : $40.66m^2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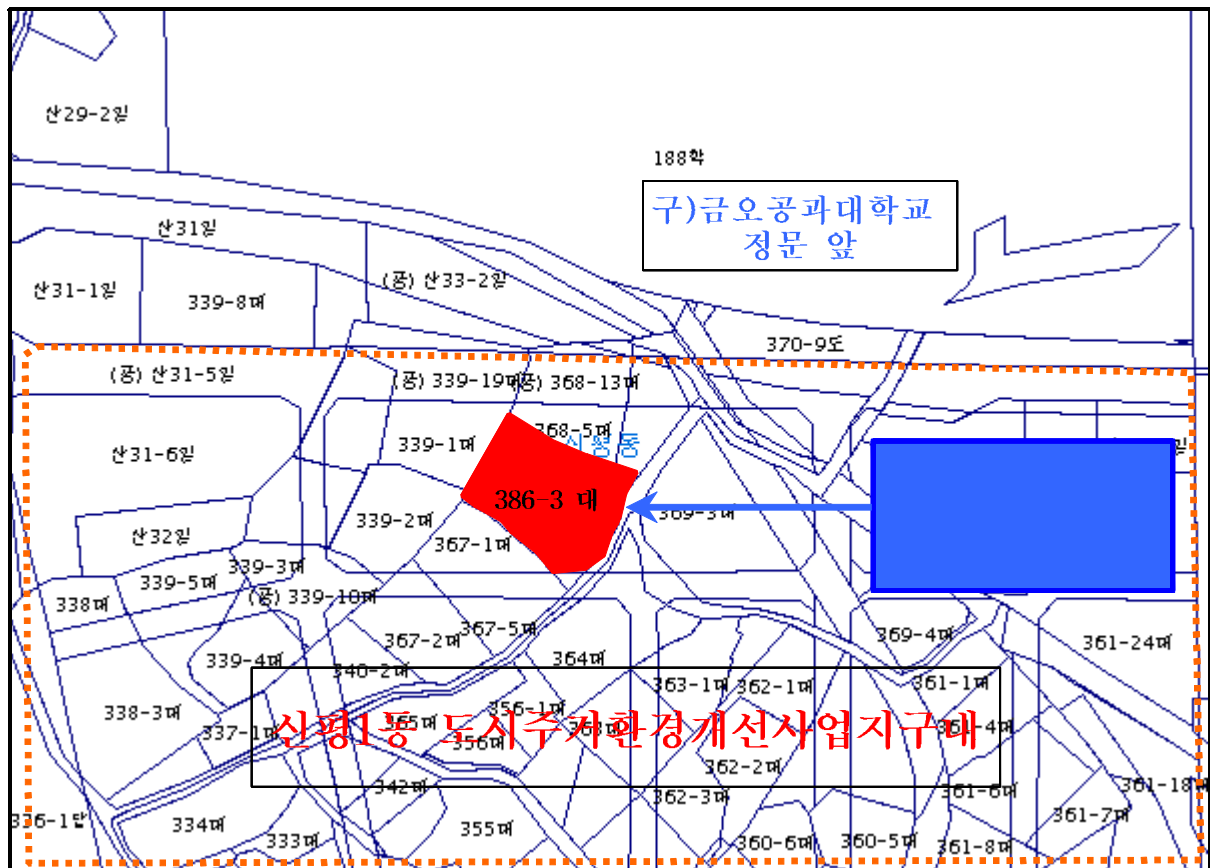
▶ 구미시 신평동 368-3번지 연면적 : $20.50m^2$

▶ 구미시 신평동 368-3번지 연면적 : $58.84m^2$

▶ 구미시 신평동 368-3번지 연면적 : $19.17m^2$

▶ 구미시 신평동 368-3번지 연면적 : $69.39m^2$

□ 위 치 도



2005년도 처분(멸실)대상 재산목록

회계명: 일반회계

(단위 : 천원, m²)

[illegible]

처 분 (멀 실) 대 상 건 물

□ 재산의 표시

○ 건 물($208.56m^2$)

- ▶ 구미시 신평동 368-3번지 연면적 : $40.66m^2$
- ▶ 구미시 신평동 368-3번지 연면적 : $20.50m^2$
- ▶ 구미시 신평동 368-3번지 연면적 : $58.84m^2$
- ▶ 구미시 신평동 368-3번지 연면적 : $19.17m^2$
- ▶ 구미시 신평동 368-3번지 연면적 : $69.39m^2$

□ 현 황 도



【 관 계 법 령 】

□ 지방자치법 제35조(지방의회 의결 사항)

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1. ~ 5. <생략>
6.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

□ 지방재정법 제 7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

-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“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당해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- ②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및 관리계획의 작성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

- ①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.
- ②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으로 한다.
 1.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),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2억원이상),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하고,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.
 2.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 제곱미터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이상),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 제곱미터 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 제곱미터 이상)

□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(공유재산관리계획)

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시장이
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
취득·처분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
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하기전까지 지방의회
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②<삭제 1995.11.15>

③<삭제 1995.11.15>

④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.
다만,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 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.